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51

발의연월일: 2021. 1. 13.

발 의 자:정희용·허은아·이 용

정진석 • 태영호 • 이채익

김영식 · 최춘식 · 지성호

김용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하여 본 법률이 마련되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우리의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 농축수산물 관계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 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법 시행 1년여 만에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일부 예외를 두었음.

그러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 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등 보다 근본 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국가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20만원 이내의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다만,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	③
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	
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의 발생 등으로 국가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
	되는 선물 등으로서 20만원
	이내의 국내에서 생산한 「농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다만,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u>해당한다.</u>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